##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98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복기왕·정성호·윤종군

정준호 • 박홍배 • 염태영

문진석 • 한민수 • 이연희

이용우 · 이정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작성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통계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주택 현황을 신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신고 결과를 취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미분양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주택시장 참여 자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에게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택시장 동향 파악 및 미분양주택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신설 등).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8조의2(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① 사업주체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매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보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88조의2(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① 사업주체는 미분양주택 현
	황을 매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ㆍ
	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를 공개할
	<u>수 있다.</u>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보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06조(과태료) ① ~ ③ (생	제106조(과태료)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b>4</b>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u>신고한 자</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